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5 선고 2020나5832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 피항소인 1. B

2. 주식회사 C

변 론 종 결 2021. 5. 18.

판 결 선 고 2021. 6. 15.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가단530615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과 제1심 공동피고 A 사이에 2018. 6.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24,438,269원 및 그 중 24,338,121원에 대하여 2019. 10. 10.부터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가액배상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와 제1심 공동피고 A 사이에 2019. 1. 1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24,438,269원 및 그 중 24,338,121원에 대하여 2019. 10. 10.부터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가액배상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피고 A”을 “A”으로 고쳐 쓰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설령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 내지 4호증(가시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축산물 도매업을 하는 피고들은 축산물 판매업을 하는 A에게 2016.경 또는 2018. 1.경부터 2019. 5.경까지 정상적으로 수십 차례 고기를 공급하면서 물품대금을 받아왔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에도 물품대금 변제 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도 한 점,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상당한 담보가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이 A의 재산상태나 금융기관과의 거래상황 등을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의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진원, 판사 이상률, 판사 윤동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면 적 : 제9층 호 58.59㎡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서울특별시 도봉구 대 13848.2㎡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3848.2분의 31.72